

의안번호	제 290 호
의 결 연 월 일	2015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이광희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5년 11월 4일

#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90
----------	-----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5년 11월 4일

발의자 : 이광희, 정영수, 이숙애,  
이종욱, 김영주, 연철흠,  
장선배

## 1. 제정이유

충청북도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한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보장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등에 대한 정의를 명시함(안 제2조)
- 나.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3제조)
- 다.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
- 라.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
- 마. 학습에 적절한 조명과 통풍, 냉·난방 등 학습환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6조)
- 바.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제한사항에 관한 학생·학부모의 청원 권리를 명시함(안 제7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나. 관계부서협의 : 협의완료

다.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1) 기 간 : 2015. 10. 6. ~ 2015. 10. 25.(20일간)

2) 제출의견 : 특이사항 없음

##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근거하여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한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충청북도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의미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의미한다.
3.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이란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행해지는 모든 학습 활동을 의미한다.
4. “정규교육과정”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5.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이란 제3호의 학습참여 여부 등에 대한 학생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의미 한다.

제3조(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① 교육감은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학교장은 제2항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 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제4조(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 ① 학생은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고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하여 자율적 선택권을 갖는다.
- ③ 학생은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한 자율적 선택으로 인하여 어떠한 유·무형의 불이익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5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교는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은 정규교육과정외학습으로 인한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과 취미생활 및 문화활동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과 자유로운 취미생활 및 문화 활동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학습환경) ① 학생은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쾌적하고 편안한 정규교육과정외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학습에 적절한 조명과 통풍, 냉·난방, 휴식공간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청원의 권리) ① 학생과 학부모는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의 제한사항에 관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이나 학교에 청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제한에 관하여 청원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확인할 의무가 있고, 그 처리 결과를 청원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청원자는 청원과 관련하여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 초·중등 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3.21.]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14.]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